



코로나 19, 함께 이겨내요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1층

TEL 055-360-4126 FAX 055-360-4139

www.경상남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org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CONTENTS

코로나19란?	01
증상	02
검사	03
접촉자 관리	07
격리	08
치료	12
격리입원치료비	13
예방	14
손씻기	15
마스크	16
거리두기	18
전자출입명부	19
코로나 관련 연락처	20

이 책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가족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건강권 향상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질병관리본부([HTTP://NCOV.MOHW.GO.KR](http://ncov.mohw.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http://www.mohw.go.kr))의 내용을 참고하여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엮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참고자료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FAQ
<http://ncov.mohw.go.kr/faqBoardList.do?brdId=3&brdGubun=38>
- 보건복지부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 '코로나19 함께 이겨 냅시다' (1판 2020년 6월)

코로나19란?

코로나19의 이름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ronavirus disease-2019)를 줄여서 코로나19 (COVID-19) 라고 한다.
- 코로나19는 2019년부터 전세계로 퍼진 새로 발견된 전염병이다.

쉬운말 설명

확진자란?

-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 검사에서 **양성은 '병에 걸렸다'**, **음성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전염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과 콧물**로 퍼져나간다.
- 침방울(비말)과 콧물이 다른 사람들의 코나 입에 직접 닿거나, 침방울과 콧물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옮길 수 있다.
- **잠복기는 1~14일**(평균 4~7일)이다



쉬운말 설명

잠복기란?

- 바이러스가 몸안에 들어가서 증상이 나타나기 까지의 기간

감염경로 불명

- 바이러스가 생긴 지역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만나지 않았는데, 일상에서 바이러스가 퍼져 나갔을 때를 말한다.
- 언제,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감염경로 조사중인 사례'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

코로나19의 고위험군

- 나이가 65세 이상
- 만성질환(오랫동안 지속하여 꾸준히 재발하는 병)이 있는 사람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고위험군에 속하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 ※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의 증상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증상

가장 흔한 증상



발열(37.5°C 이상),
마른 기침, 피로감

그 외 증상



냄새 및 맛을 모름, 근육통(몸살),
인후통(목 통증), 코막힘, 콧물,
호흡불편, 가슴답답,
흉통(가슴통증), 설사 등

무증상



증상이 없어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

증상이 있을 때 행동 순서

01

1339나
지역보건소에
전화한다.

02

자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03

신고 후에는
안내에 따른다.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1339 카카오톡 상담 또는 ☎129 콜센터 영상수어상담을 이용한다.
- 필요한 경우 자가격리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Tip

보건소에 전화할 때 받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해 둔다

- 이름, 나이, 사는 곳, 연락처 등
- 현재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 확진자를 만났거나 확진자가 갔던 곳에 방문했는지
- 확진자 여러 명이 나온 곳과 관련이 있는지
- 지원이 필요한지(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



코로나19 검사대상

- 확진자와 만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증상(열, 기침, 몸살 등)이 나타나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사람
- 외국에 다녀왔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사람
- 여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에 갔으며, 다녀온 지 14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열, 기침, 몸살 등)이 나타나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된다고 한 사람
- 최근에는 접촉자 중 무증상자도 검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검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임에도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2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사 장소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 되는 사람은 가까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 하여 검사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 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전화하여 먼저 문의한다.



질병관리본부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다.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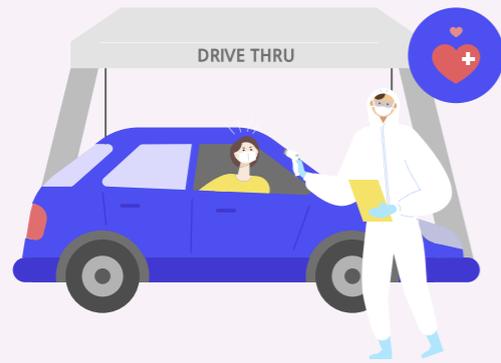
검사

쉬운말 설명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란?

드라이브스루

차에 탄 채 안전하게 문진, 검진, 검체채취, 차량소독을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이다.



- 방문 전 유선상으로 예약 가능 여부 문의 후 방문한다.
- 경상남도 내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진주시 보건소 055-749-5714 김해시 보건소 055-330-4481
창녕군 보건소 055-530-6217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44

워킹스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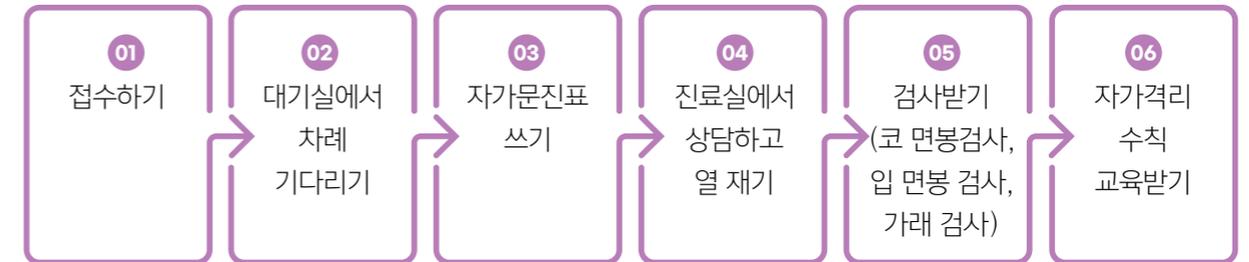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낮추는 음압 설비를 갖춘 공중전화박스와 같은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선별진료소이다.

검사받을 사람이 부스 안으로 들어서면 의료진이 부스 밖에서 장갑이 연결된 동그란 구멍 안으로 손만 집어넣은 채로 콧구멍과 입안에 면봉을 넣어 검사한다.



검사

검사순서



검사방법

쉬운말 설명

검체란?

- 검사할 때 감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자 몸에서 얻어낸 분비물이나 가래 등을 말한다.

채취란?

- 검사에 필요한 것을 찾거나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는 상기도 검사와 하기도 검사가 있다.
- 검체 채취 시 불편감 ·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상기도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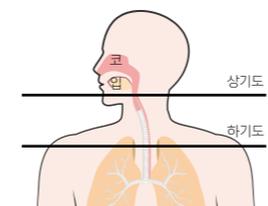


코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넣어 분비물을 채취한다.



입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한다.

하기도 검사



타액(침)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를 채취한다.
가래가 없는 경우는 역지로 검사하지 않는다.

검사

검사결과 소요시간

- 검사 후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보통 6시간 정도 걸리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휴대전화 문자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선별진료소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
- 검사 결과지가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야 한다.

검사비용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는 검사비용을 내지 않는다.
-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낸다.
- 단,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 검사의 경우는 검사비용을 낼 수 있다.
- 검사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를 받을때 확인이 필요하다.

검사받으러 갈 때 주의사항

- **반드시 마스크를 쓴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걸어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



검사받은 후 주의사항

- 검사 후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간다.
- 집에 가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쓴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걸어가거나 자동차를 이용한다.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
-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집에서도 마스크를 쓴다.
- 격리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에 따라 지낸다.(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09쪽 확인)
- 기침, 콧물이 나는 등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면 보건소 또는 1339로 연락한다.
-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위 내용은 지켜야 한다.(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동안)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코로나19 치료를 받게 된다.



접촉자 관리

접촉자 범위

- 접촉자란 코로나19 확진자와 만났거나 확진자가 갔던 곳을 비슷한 시기에 방문했던 사람을 말하며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에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의 즉각대응팀이 평가하여 정한다.

접촉자로 확인 후 진행절차

격리 실시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마주친) 날로부터 14일(잠복기)동안 격리를 한다. 격리의 종류는 자가격리(집), 생활치료센터(연수원 또는 교육원등의 시설), 의료기관(병원)이다.



01

격리 통지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촉자에게 보내는 격리통지서를 받는다.



02

생활수칙 안내

1:1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생활수칙을 안내 받는다.



03

유선 연락

격리가 끝날때까지 매일 일어나는지, 기침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전화나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격리

격리의 종류

• 격리는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집), 생활치료센터(연수원 또는 교육원등의 시설), 의료기관(병원)에서 할 수 있다.

쉬운말 설명

공동격리(코호트 격리)란?

• 동일한 바이러스(코로나19)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다수의 사람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다시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

다시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는 경우

- ☑ 검체의 질이나 양이 알맞지 않은 경우
- ☑ 검체의 배송상태가 나쁘거나 잘못 다루어진 경우
- ☑ 감염의 초기나 너무 늦은 시기에 검체가 채취된 경우
- ☑ 검사의 기술적 문제 등

검사서 음성이 나와도 2주동안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을 지킨다.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

- **자가격리란** 확진자를 만났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자신의 집 또는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다.
- **자가 격리 대상**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낸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격리

Tip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경우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청소하고 10분 환기 후에 다른사람이 사용하기



병원을 가거나 꼭 밖에 나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함께 사는 사람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꼭 필요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옷과 이불 등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따로 분리하여 씻기 전에는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 하기

격리

Tip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화장실이나 부엌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그릇, 수저, 물컵, 수건, 이불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옷과 이불 등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따로 분리하여 씻기 전에는 다른 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격리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 집에서 독립된 공간이 없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에 연락하여 안내 받는다.

자가격리 시 생활지원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한다.
 - * 단 외국에서 들어온 자의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으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던 장애인이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활동급여 제공** (월120시간)이 된다.
-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의 경우 평소의 활동지원 시간과 상관없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때에는 가족이 돌봄 제공자가 될 수 있어 급여(돈)를 받을 수 있다.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완화, 보호자 또는 장애인이 동의하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하지 않고 밖에서 돌아다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쉬운말 설명

코로나 구상권

자가격리 대상자이나 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 그 지역의 전염병을 막는 작업 비용 및 접촉자들의 코로나 검사비 및 치료비등을 나라에서 먼저 돈을 낸 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하는 권리

격리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 생활치료센터란 연수원, 교육원 등과 같은 시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다.
- 의료진이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중 시·도에서 확인한 가벼운 증상 환자(열, 기침 등이 심하지 않음)가 치료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확진자 이송



-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연락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보건소 **음압구급차량** 또는 **119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한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 장애 유형·정도·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운전석이 분리된 차량(앰블런스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을 받는다.

치료

치료법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는 할 수 있지만 현재(2020년 10월)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치료제는 없다.
-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므로 항생제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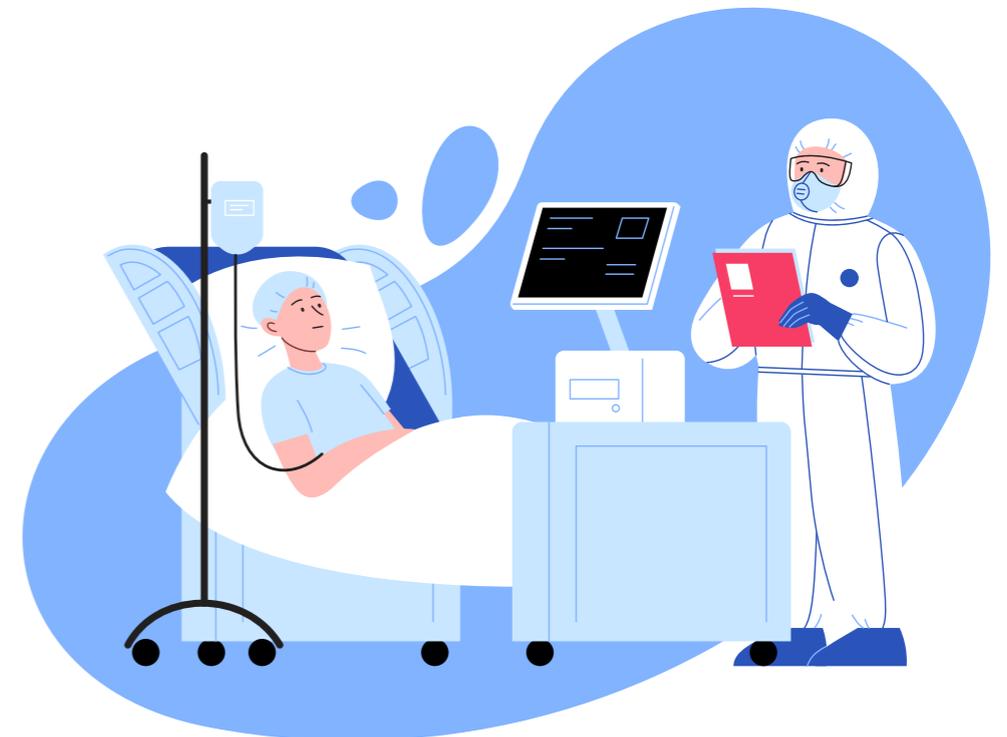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

-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코로나19증상이 있는 접촉자이다.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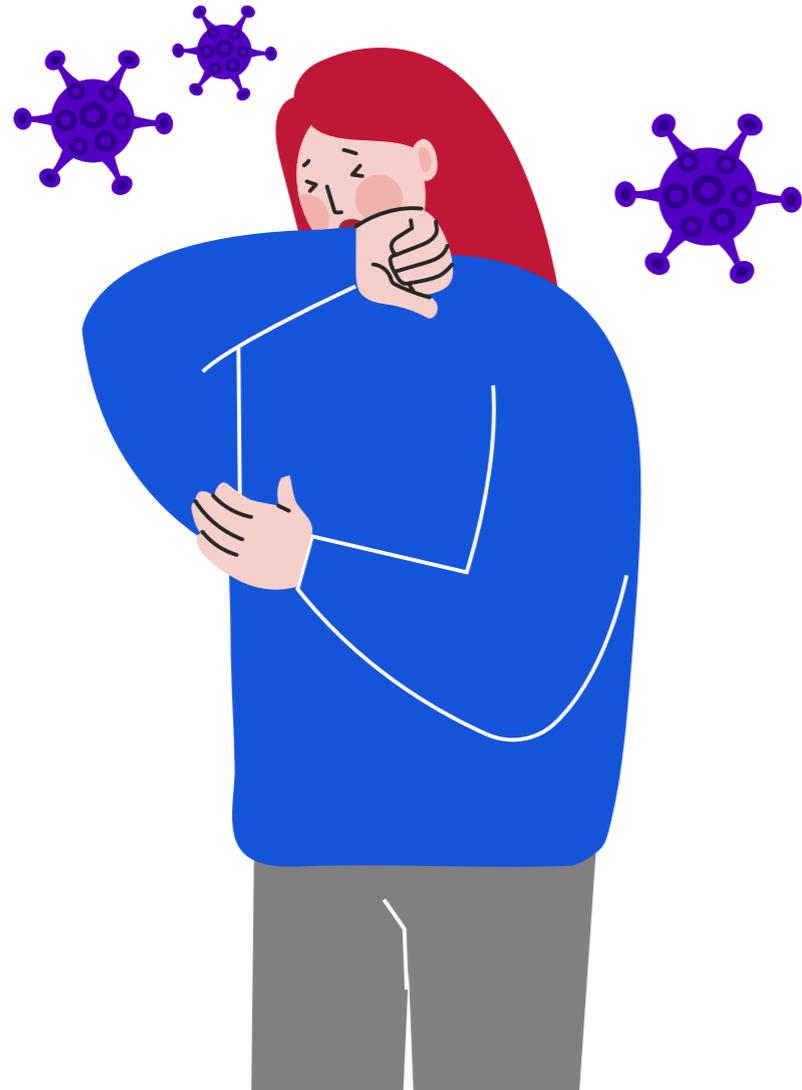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는 무료이다.)**
-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당뇨, 천식, 심장질환 등) 악화 및 합병증 발생하여 동시에 진료한 경우, 코로나19 입원치료비만 지원 가능하다. **(코로나19 외의 질병 입원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의 질환으로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격리해제일 이내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만 지원 가능하다.**



예방

코로나 19 예방

-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 및 재채기 하기, 손씻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와 같이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전차출입명부 작성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는 행동을 지킨다.



손씻기

손씻기

- 손을 통해 눈, 코, 입으로 바이러스를 옮겨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다.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는다.
- 물로 씻을 수 없는 경우 알코올 손 소독제로 자주 씻는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올바른 손씻기



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기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기



손가락 사이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기



두 손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지르기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르기



손톱 밑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기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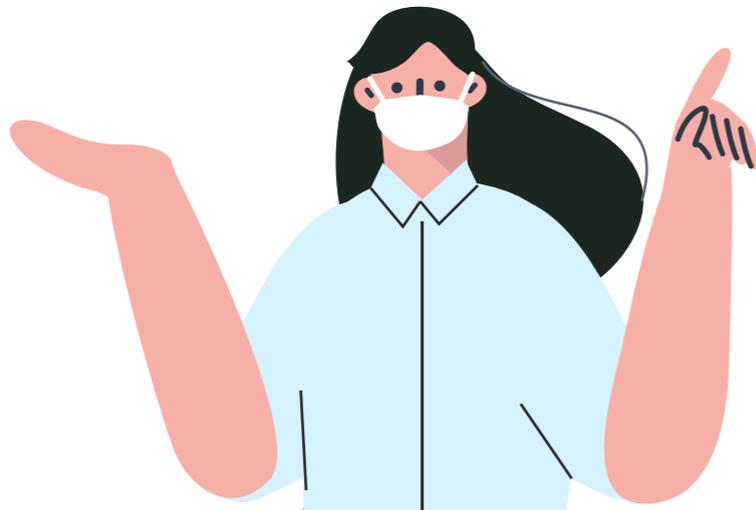
마스크

-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침방울을 통한 전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 현재 경상남도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낼 수 있다.

마스크 종류

- **마스크 종류** : 마스크는 각각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KF 표기가 된 마스크는 성능에 따라 세 가지가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제품이라는 뜻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수술용 마스크(덴탈 마스크)**
침방울(비말)은 차단하지만 미세먼지 등 작은 입자는 차단력이 낮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KF55 정도로 인정한다.
- **면 마스크**
면 마스크는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매일 세탁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Tip 일회용 마스크는 세탁하여 재사용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스크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 01**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02** 마스크를 쓸 때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는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 03**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마스크 줄을 잡고 벗는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이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는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한다.



- 04**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05** 코와 입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어 마스크 위로 코가 나오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리두기

거리두기

-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한다.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최소1m))** 거리를 유지한다.
-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7. 시행)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모임 행사	300명 이상 지자체 협의 필요	집회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기관 ·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인원 제한			필수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유치원, 학교	(전면) 등교 및 원격수업 (전체 인원의 2/3 이상 등교 가능)	등교 인원 제한 (전체의 2/3 이하)	등교 및 원격수업 (전체의 1/3~2/3 이하)	전체 인원 1/3만 등교 가능	전면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긴급돌봄 제외)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고 모임 식사 자제	정규행사 인원 30% 제한 모임 식사 금지	정규행사 인원 20% 제한 모임 식사 금지	비대면 모임 식사 금지	1인 영상만 가능 모임 식사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50% 입장	관중 30% 입장	관중 10% 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시설 면적 4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가족 참석만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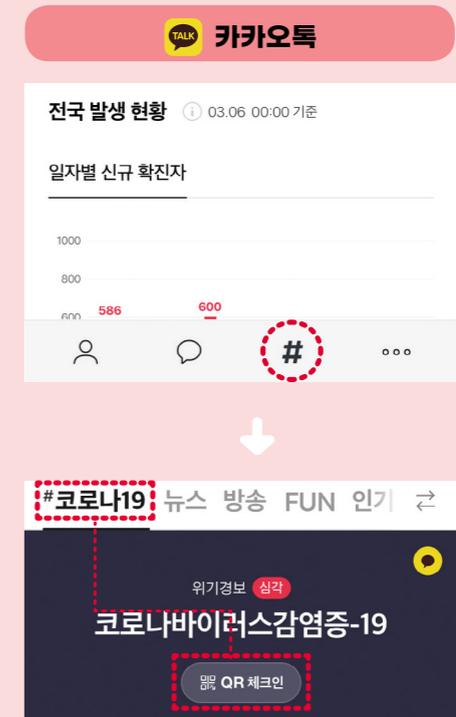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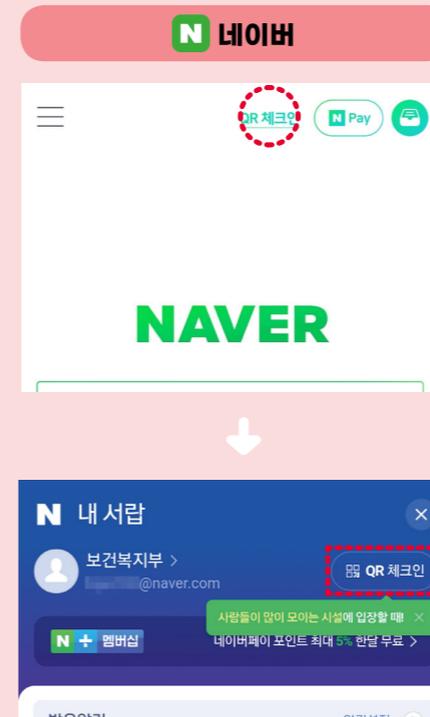
전자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파악과 관리 등 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뷔페, 교회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QR코드를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이용방법

- 01 QR코드 발급회사(네이버, 카카오톡 등)에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을 받는다. QR코드는 1회용으로 발급되며 시설 입장 시 15초 동안만 효력을 유지한다.



- 02 발급된 QR코드를 관리자에게 보여준 후에 들어가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전화상담	1339
다산콜센터 전화상담	지역번호+120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상담	카카오톡에서 'KCDC질병관리본부' 채널 추가하여 1:1 문자상담 요청
129 영상수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홈페이지 누리집(www.129.go.kr)에서 '상담안내' 또는 중간부분 좌측 고정배너 '영상수어상담' 클릭하여 영상수어상담 요청 129 앱을 통한 영상수어상담 요청
수어통역센터	영상통화로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1339(질병관리본부)에 상담 요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	ncov.mohw.go.kr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경상남도 홈페이지	www.gyeongnam.go.kr → 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대책 → 선별 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지역별 보건소

보건소	전화번호	보건소	전화번호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4000	의령군보건소	055-570-4010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45-4000	함안군보건소	055-580-3101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01	창녕군보건소	055-530-6201
진주시보건소	055-741-4000	고성군보건소	055-670-4001
통영시보건소	055-650-6061	남해군보건소	055-860-8701
사천시보건소	055-831-3560	하동군보건소	055-882-4000
김해시보건소	055-330-3114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500
밀양시보건소	055-359-7020	함양군보건소	055-960-5340
거제시보건소	055-639-6200	거창군보건소	055-940-8310
양산시보건소	055-388-4000	합천군보건소	055-930-3695